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40p	문제-본문	<p>더 알아보기 국제우편물의 종류(분류)</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국제 통상 우편물</td> <td rowspan="2">내용물에 따른 구분</td> <td>L/C</td> <td>서정(Letters) 우편엽서(Postcard) 항공서간(Aerogramme)</td> <td rowspan="2">우리나라 구분방식</td> </tr> <tr> <td>A/O</td> <td>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 시각장애인용우편물(Items for the blind) 우편지투배달인쇄물(M-bag)</td> </tr> <tr> <td></td> <td>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td> <td></td> <td>우선취급(Priority)우편물 비우선취급(Non-priority)우편물</td> <td>일부국가 구분방식</td> </tr> </table> <p>국제소포 우편물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하는 소포 ※ (항공·선편)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p> <p>K-Packet (계약고객 전용)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2kg 이하의 소형물품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국제 특급 우편물(EMS)</td> <td>서류</td> <td>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서류기준 :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사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td> <td rowspan="2">우선우송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td> </tr> <tr> <td>비서류</td> <td>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td> </tr> </table> <p>한중 해상 특수우편물 (계약고객 전용)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30kg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서비스, 인턴함·위해함 간 운영 선택 이용</p> <p>※ 사진통관정보제공은 항공 L/C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상국가도 추가되고 있는 추세임 ※ 부피중량은 항공우편물에만 적용됨(선편은 적용대상이 아님) ※ 실중량 = 실제중량 = 무게중량 = Actual weight, 부피중량 = 체적중량 = Volume weight</p>	국제 통상 우편물	내용물에 따른 구분	L/C	서정(Letters) 우편엽서(Postcard) 항공서간(Aerogramme)	우리나라 구분방식	A/O	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 시각장애인용우편물(Items for the blind) 우편지투배달인쇄물(M-bag)		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		우선취급(Priority)우편물 비우선취급(Non-priority)우편물	일부국가 구분방식	국제 특급 우편물(EMS)	서류	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서류기준 :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사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우선우송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비서류	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p>더 알아보기 국제우편물의 종류(분류)</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국제 통상 우편물</td> <td rowspan="2">내용물에 따른 구분</td> <td>L/C</td> <td>서정(Letters) 우편엽서(Postcard) 항공서간(Aerogramme)</td> <td rowspan="2">우리나라 구분방식</td> </tr> <tr> <td>A/O</td> <td>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 시각장애인용우편물(Items for the blind) 우편지투배달인쇄물(M-bag)</td> </tr> <tr> <td></td> <td>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td> <td></td> <td>우선취급(Priority)우편물 비우선취급(Non-priority)우편물</td> <td>일부국가 구분방식</td> </tr> </table> <p>국제소포 우편물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하는 소포 ※ (항공·선편)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p> <p>K-Packet (계약고객 전용)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2kg 이하의 소형물품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국제 특급 우편물(EMS)</td> <td>서류</td> <td>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서류기준 :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사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td> <td rowspan="2">우선우송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td> </tr> <tr> <td>비서류</td> <td>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td> </tr> </table> <p>한중 해상 특수우편물 (계약고객 전용)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30kg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서비스, 인턴함·위해함 간 운영 선택 이용</p> <p>※ 사진통관정보제공 대상우편물: 비서류, EMS(서류), 소형포장물 ※ 부피중량은 항공우편물에만 적용됨(선편은 적용대상이 아님) ※ 실중량 = 실제중량 = 무게중량 = Actual weight, 부피중량 = 체적중량 = Volume weight</p>	국제 통상 우편물	내용물에 따른 구분	L/C	서정(Letters) 우편엽서(Postcard) 항공서간(Aerogramme)	우리나라 구분방식	A/O	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 시각장애인용우편물(Items for the blind) 우편지투배달인쇄물(M-bag)		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		우선취급(Priority)우편물 비우선취급(Non-priority)우편물	일부국가 구분방식	국제 특급 우편물(EMS)	서류	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서류기준 :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사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우선우송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비서류	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국제 통상 우편물	내용물에 따른 구분	L/C			서정(Letters) 우편엽서(Postcard) 항공서간(Aerogramme)	우리나라 구분방식																																																																																															
		A/O	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 시각장애인용우편물(Items for the blind) 우편지투배달인쇄물(M-bag)																																																																																																		
	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		우선취급(Priority)우편물 비우선취급(Non-priority)우편물	일부국가 구분방식																																																																																																	
국제 특급 우편물(EMS)	서류	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서류기준 :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사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우선우송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비서류	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국제 통상 우편물	내용물에 따른 구분	L/C	서정(Letters) 우편엽서(Postcard) 항공서간(Aerogramme)	우리나라 구분방식																																																																																																	
		A/O	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진통관정보제공, (항공)부피중량 적용 시각장애인용우편물(Items for the blind) 우편지투배달인쇄물(M-bag)																																																																																																		
	취급 속도에 따른 구분		우선취급(Priority)우편물 비우선취급(Non-priority)우편물	일부국가 구분방식																																																																																																	
국제 특급 우편물(EMS)	서류	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서류기준 :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 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사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우선우송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비서류	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주소장) 이용 ※ 사진통관정보제공, 부피중량 적용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정오표 반영																																																																																																		
150p	문제-본문	<p>(3) 특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성·신뢰성·정기성·안전성 보장 모든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에서 접수 및 발송 가능 각 접수 우체국마다 그날 업무 마감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마감시간 이후 분은 다음날 국외 발송 승인 후 접수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송달예정기간*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한다(다만, 배달을 시도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와 공휴일 및 통관 소요일은 송달예정기간에서 제외). <p>*송달예정기간은 포스트넷 '발송조건'의 '배달소요일수'를 기준으로 함 ※ EMS 배달보장서비스 적용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에서 제공한 배달예정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진 경우 우편요금 반환(세관제류 등은 기간에서 제외)</p> <p>⑤ 외국에서 국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국제특급 우편물은 국내당일 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한다.</p>	<p>(3) 특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성·신뢰성·정기성·안전성 보장 모든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에서 접수 및 발송 가능 각 접수 우체국마다 그날 업무 마감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마감시간 이후 분은 다음날 국외 발송 승인 후 접수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송달예정기간*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한다(다만, 배달을 시도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와 공휴일 및 통관 소요일은 송달예정기간에서 제외). <p>*송달예정기간은 포스트넷 '발송조건'의 '배달소요일수'를 기준으로 함 ※ EMS 배달보장서비스 적용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에서 제공한 배달예정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진 경우 우편요금 반환(세관제류 등은 기간에서 제외)</p> <p>⑤ 외국에서 국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국제특급 우편물은 국내 익일 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한다.</p>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정오표 반영																																																																																																		
188p	문제-본문	<p>(1) 대상 관서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p> <p>(2) 대상 우편물 : EMS(비서류), 소포(항공, 선편), 소형포장물, K-packet 등 ※ 향후 LC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로 단계별 확대 예정</p> <p>(3) 대상국가 : 50개국(23.10. 현재)</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국가(50)</th> </tr> </thead> <tbody> <tr> <td>아메리카(3)</td> <td>미국</td> <td>캐나다</td> <td>브라질</td> <td></td> </tr> <tr> <td rowspan="2">아시아(10)</td> <td>태국</td> <td>홍콩</td> <td>중국</td> <td>일본</td> </tr> <tr> <td>몽골</td> <td>키르기스스탄</td> <td>마카오</td> <td>말레이시아</td> </tr> <tr> <td rowspan="2">중동(3)</td> <td>아랍에미리트</td> <td>카타르</td> <td>요르단</td> <td></td> </tr> <tr> <td>그리스</td> <td>네덜란드</td> <td>덴마크</td> <td>독일</td> </tr> <tr> <td rowspan="5">유럽(32)</td> <td>리투아니아</td> <td>폴란드</td> <td>벨기에</td> <td>불가리아</td> </tr> <tr> <td>슬로바키아</td> <td>슬로베니아</td> <td>아일랜드</td> <td>에스토니아</td> </tr> <tr> <td>체코</td> <td>크로아티아</td> <td>포르투갈</td> <td>폴란드</td> </tr> <tr> <td>노르웨이</td> <td>스위스</td> <td>몰도바</td> <td>우크라이나</td> </tr> <tr> <td>오세아니아(1)</td> <td>호주</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국가(50)				아메리카(3)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시아(10)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몽골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중동(3)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유럽(32)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오세아니아(1)	호주			<p>(1) 대상 관서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p> <p>(2) 대상 우편물 : 비서류, EMS(서류), 소형포장물</p> <p>(3) 대상국가 : UPU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와 우편물을 교환하는 국가(24.01. 현재)</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국가(50)</th> </tr> </thead> <tbody> <tr> <td>아메리카(3)</td> <td>미국</td> <td>캐나다</td> <td>브라질</td> <td></td> </tr> <tr> <td rowspan="2">아시아(10)</td> <td>태국</td> <td>홍콩</td> <td>중국</td> <td>일본</td> </tr> <tr> <td>몽골</td> <td>키르기스스탄</td> <td>마카오</td> <td>말레이시아</td> </tr> <tr> <td rowspan="2">중동(3)</td> <td>아랍에미리트</td> <td>카타르</td> <td>요르단</td> <td></td> </tr> <tr> <td>그리스</td> <td>네덜란드</td> <td>덴마크</td> <td>독일</td> </tr> <tr> <td rowspan="5">유럽(32)</td> <td>리투아니아</td> <td>폴란드</td> <td>벨기에</td> <td>불가리아</td> </tr> <tr> <td>슬로바키아</td> <td>슬로베니아</td> <td>아일랜드</td> <td>에스토니아</td> </tr> <tr> <td>체코</td> <td>크로아티아</td> <td>포르투갈</td> <td>폴란드</td> </tr> <tr> <td>노르웨이</td> <td>스위스</td> <td>몰도바</td> <td>우크라이나</td> </tr> <tr> <td>오세아니아(1)</td> <td>호주</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국가(50)				아메리카(3)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시아(10)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몽골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중동(3)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유럽(32)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오세아니아(1)	호주		
구분	국가(50)																																																																																																				
아메리카(3)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시아(10)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몽골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중동(3)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유럽(32)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오세아니아(1)	호주																																																																																																			
구분	국가(50)																																																																																																				
아메리카(3)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시아(10)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몽골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중동(3)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유럽(32)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기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오세아니아(1)	호주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정오표 반영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89p	문제-본문	<p>3 유럽연합의 ICS2 R2(Import Control System 2, Release 2)</p> <p>(1) 개요</p> <p>① ICS2 R2 대상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도착국가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승인 완료(AC)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 가능</p> <p>※ AC(Assessment Complete 상대국가에서 승인완료 운송수단 탑재가능)</p> <p>② 도착국 세관은 사전통관정보를 통해 안전성 · 위험성 등을 확인하여 승인완료</p> <p>※ (R2) 항목은 '23.9.25. 접수부터, (R3) 선편은 '24년 3월 이후 적용</p> <p>※ R3 단계가 실시되더라도 교제변경이 없는 한 당분간 제도명은 'ICS2 R2'로 유지함</p>	<p>3 유럽연합의 ICS2 R2(Import Control System 2, Release 2)</p> <p>(1) 개요</p> <p>① ICS2 R2 대상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도착국가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승인 완료(AC)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 가능</p> <p>※ AC(Assessment Complete 상대국가에서 승인완료 운송수단 탑재가능)</p> <p>② 도착국 세관은 사전통관정보를 통해 안전성 · 위험성 등을 확인하여 승인완료</p> <p>※ (R2) 항목은 '23.9.25. 접수부터, (R3) 선편은 '24년 3월 이후 적용</p> <p>※ R3 단계가 실시되더라도 교제변경이 없는 한 당분간 제도명은 'ICS2 R2'로 유지함</p>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경우표 반영																																																						
385p	문제-본문	<p>② 뛰어난 환급성이다.</p> <p>③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고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비용도 저렴하며 매매절차가 간단하고 해당금 수령이나 보관 등 증권회사에서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다.</p> <p>④ 주식 중에는 거래물량이 적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려운 종목도 있으므로 환급성의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p> <p>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다만,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매매차익의 5,00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를 하는 것에 비해 주식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p> <p>⑥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하다. 주식은 부동산 및 실물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소유자산 가치가 올라 주식의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p>	<p>② 뛰어난 환급성이다.</p> <p>③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고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비용도 저렴하며 매매절차가 간단하고 해당금 수령이나 보관 등 증권회사에서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다.</p> <p>④ 주식 중에는 거래물량이 적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려운 종목도 있으므로 환급성의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p> <p>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다만,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매매차익의 5,00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를 하는 것에 비해 주식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p> <p>⑥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하다. 주식은 부동산 및 실물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소유자산 가치가 올라 주식의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p>																																																						
478p	문제-본문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세 기본세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과세표준(2023년)</th> <th>세율</th> <th>누진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d>-</td> </tr> <tr> <td>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td> <td>15%</td> <td>108만원</td> </tr> <tr> <td>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td> <td>24%</td> <td>522만원</td> </tr> <tr> <td>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td> <td>36%</td> <td>1,400만원</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td> <td>38%</td> <td>1,940만원</td> </tr> <tr> <td>3억원 초과~5억원 이하</td> <td>40%</td> <td>2,540만원</td> </tr> <tr> <td>5억원 초과~10억원 이하</td> <td>42%</td> <td>3,540만원</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d>6,540만원</td> </tr> </tbody> </table> <p>7 신고와 납부</p> <p>(1)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p> <p>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p> <p>(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사례 분석)</p> <p>[사례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2023년도 종합소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div> <p>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p> <p>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회사채이자)</p> <p>※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에서 제외됨</p> <p>② 기준금액요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p> <p>③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p> <p>③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p> <p>(2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p> <p>= (8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p> <p>= (74,900,000 × 24%) - 5,220,000 + 2,800,000</p> <p>= 12,756,000 + 2,800,000 = 15,556,000원</p>	과세표준(2023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6%	1,4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세 기본세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과세표준 (2023년 이후)</th> <th>세율</th> <th>누진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d>-</td> </tr> <tr> <td>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td> <td>15%</td> <td>126만원</td> </tr> <tr> <td>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td> <td>24%</td> <td>576만원</td> </tr> <tr> <td>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544만원</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td> <td>38%</td> <td>1,994만원</td> </tr> <tr> <td>3억원 초과~5억원 이하</td> <td>40%</td> <td>2,594만원</td> </tr> <tr> <td>5억원 초과~10억원 이하</td> <td>42%</td> <td>3,594만원</td> </tr> <tr> <td>10억 초과</td> <td>45%</td> <td>6,594만원</td> </tr> </tbody> </table> <p>7 신고와 납부</p> <p>(1)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p> <p>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p> <p>(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사례 분석)</p> <p>[사례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14% 이자소득만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2023년도 종합소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예금 이자 : 50,000,000원 -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원 •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div> <p>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p> <p>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 1억원(은행예금이자+회사채이자)</p> <p>※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에서 제외됨</p> <p>② 기준금액요과 금융소득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p> <p>③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p> <p>③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p> <p>(2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p> <p>= (8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p> <p>= (74,900,000 × 24%) - 5,220,000 + 2,800,000</p> <p>= 12,216,000 + 2,800,000 = 15,016,000원</p>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과세표준(2023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6%	1,4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경우표 반영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79p	문제-본문	<p>㉔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 \times 14\% = 100,000,000 \times 14\% = 14,000,000\text{원}$</p> <p>㉕ 종합소득산출세액은 ㉔과 ㉓ 중 큰 금액인 15,556,000원</p> <p>[사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2023년도 종합소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예금 이자: 60,000,000원 - 사업소득 금액: 30,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5,100,000원으로 가정 </div> <p>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60,000,000원</p> <p>②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p> <p>㉔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20,000,000 \times 14\%$ $= (64,900,000 \times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text{원}$</p> <p>㉕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금액} \times 14\%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60,000,000 \times 14\%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times 15\% - 1,080,000) = 11,055,000\text{원}$</p> <p>㉖ 종합소득산출세액은 ㉔과 ㉕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p> <p>[사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종합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2023년도 종합소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은행예금 이자: 20,000,000원 (ii) 비영리대금이자: 10,000,000원 (iii) 비상장법인배당: 30,000,000원 (iv)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5,100,000원으로 가정 </div> <p>• 금융소득 = (i) + (ii) + (iii) = 60,000,000원</p> <p>•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p> <p>*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 제외 배당, G-up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p> <p>• 배당가산(Gross-up) 대상 금액: 30,000,000원</p> <p>• 배당가산액: 30,000,000 × 11% = 3,300,000원</p> <p>•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㉔, ㉕ 중 큰 금액]: 18,770,000원</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PART 02 문제라 답을 제트 479</p>	<p>㉔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 \times 14\% = 100,000,000 \times 14\% = 14,000,000\text{원}$</p> <p>㉕ 종합소득산출세액은 ㉔과 ㉓ 중 큰 금액인 15,016,000원</p> <p>[사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2023년도 종합소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예금 이자: 60,000,000원 - 사업소득 금액: 30,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5,100,000원으로 가정 </div> <p>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60,000,000원</p> <p>②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p> <p>㉔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text{천만원 초과금액}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text{천만원} \times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20,000,000 \times 14\%$ $= (64,900,000 \times 24\% - 5,760,000) + 2,800,000 = 12,616,000\text{원}$</p> <p>㉕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금액} \times 14\%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60,000,000 \times 14\% + (3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times 15\% - 1,260,000) = 10,875,000\text{원}$</p> <p>㉖ 종합소득산출세액은 ㉔과 ㉕ 중 큰 금액인 12,616,000원</p> <p>[사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종합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2023년도 종합소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은행예금 이자: 20,000,000원 (ii) 비영리대금이자: 10,000,000원 (iii) 비상장법인배당: 30,000,000원 (iv)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5,100,000원으로 가정 </div> <p>• 금융소득 = (i) + (ii) + (iii) = 60,000,000원</p> <p>•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p> <p>*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 제외 배당, G-up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p> <p>• 배당가산(Gross-up) 대상 금액: 30,000,000원</p> <p>• 배당가산액: 30,000,000 × 11% = 3,300,000원</p> <p>•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㉔, ㉕ 중 큰 금액]: 18,230,000원</p>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정오표 반영
480p	문제-본문	<p>㉔ 종합과세방식 $[(\text{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text{배당가산액} + \text{다른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액} + (\text{종합과세 기준금액}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 5,100,000] \times 35\% - 14,900,000 + (20,000,000 \times 14\%) = 18,770,000$</p> <p>㉕ 분리과세방식 $[(50,000,000 - 5,100,000) \times 15\% - 1,080,000] + [(10,000,000 \times 25\% + 50,000,000 \times 14\%) = 15,155,000$</p> <p>• 배당소득공제[㉔, ㉕ 중 작은 금액]: 3,300,000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㉔ 배당가산액: 30,000,000 × 11% = 3,300,000</p> <p>㉕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0,000)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000) = 3,615,000원</p> </div>	<p>㉔ 종합과세방식 $[(\text{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text{배당가산액} + \text{다른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액} + (\text{종합과세 기준금액}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 5,100,000] \times 35\% - 15,440,000 + (20,000,000 \times 14\%) = 18,230,000$</p> <p>㉕ 분리과세방식 $[(50,000,000 - 5,100,000) \times 15\% - 1,260,000] + [(10,000,000 \times 25\% + 50,000,000 \times 14\%) = 14,975,000$</p> <p>• 배당소득공제[㉔, ㉕ 중 작은 금액]: 3,255,000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㉔ 배당가산액: 30,000,000 × 11% = 3,300,000</p> <p>㉕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230,000)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4,975,000) = 3,255,000원</p> </div>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정오표 반영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